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87

발의연월일: 2024. 8. 6.

발 의 자: 강선영·배현진·허성무

김대식 • 한기호 • 정성호

주호영 · 강대식 · 최수진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·유통·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, 국방기술품질원의 임·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며, 「형법」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방에 필요한 병기·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·연구·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·직원은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,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·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·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·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, 국방기술품질원 임·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(안 제60조제2항). 법률 제 호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중 "「형법」"을 "「형법」이나"로, "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"를 "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「국 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 ① (생	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	②		
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			
법」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			
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			
•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			
하며, <u>「형법」</u> 그 밖의 <u>법률에</u>	<u></u> 「형법」이나 <u>처</u>		
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	<u>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「국</u>		
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	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		
	법률」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		
	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		
	<u>원으로</u>		